

전주지방법원 2015. 11. 25 선고 2015가단2112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주원

피고A

변론 종결 2015. 11. 4.

판결 선고 2015. 11. 2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[별지 3]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[별지 2]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나. 2015. 5. 13.부터 위 가.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3,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 1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김성훈

별지